행정중심복합도시 6-3M2블록(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산울2로 40, 산울마을5단지)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995세대 중 잔여세대 4호 (전용면적 59㎡ 3호,84㎡ 1호)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 (단,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의 계약자 및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여부, 소득·자산 요건 등을 불문하고 청약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 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1.11.25.)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14.(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5.04.14.)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공사준공이 완료되어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LH청약플러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25.04.14.)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블록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현장 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공인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지구여건,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1.25)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11.25게시)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5.04.14.)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	
				전자계약	현장계약
2025.04.14(월)	4.24(목) 10:00~17:00	4.30(수) 16:00	5.02(금) 10:30~17:00	5.29(목) 10:00~17:00	5.30(금) 13:00~17:00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

※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 : 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8-3) / 전자계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 내 계약금 입금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세종특별본부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최초 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2021.12.17.)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사 자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블록 : 공공분양주택 지하2층~지상29층(최고층수) 14개동 전용면적 85㎡이하 995세대 중 4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면적(㎡)	건설호수	계약완료	잔여호수	금회 모집호수		최고층수	입주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당첨자	예비자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6-3 M2	059.9700A	59A	확장	59.9700	22.4024	7.5301	42.1010	132.0035	46.4194	477	476	1	1	5	29	'25.05.29 ~ '25.07.28
	059.9400B	59B	확장	59.9400	22.3912	7.5264	42.0800	131.9376	46.3962	253	251	2	2	10	29	
	084.9100B	84B	확장	84.9100	31.7190	10.6618	59.6098	186.9006	65.7242	43	42	1	1	5	24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공사준공이 완료되어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해당주택의 준공 월은 2023년 12월으로 입주가 종료된 단지입니다.

3. 공급금액(주택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및 선택품목금액 등)

[단위 : 원]

주택형	동호수	마이너스옵션 여부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시10 %	입주시 90%
059.9700A	510-303	기본형	합 계	286,112,000	28,609,000	257,503,000
			주택가격	266,538,000	26,653,000	239,885,000
			발코니 확장금액	7,279,000	727,000	6,552,000
			선택품목금액	12,295,000	1,229,000	11,066,000

059.9400B	506-501	기본형	**합 계**	285,397,000	28,539,000	256,858,000
			주택가격	271,884,000	27,188,000	244,696,000
			발코니 확장금액	7,161,000	716,000	6,445,000
			선택품목금액	6,352,000	635,000	5,717,000
059.9400B	513-2002	기본형	**합 계**	288,218,000	28,821,000	259,397,000
			주택가격	271,884,000	27,188,000	244,696,000
			발코니 확장금액	7,161,000	716,000	6,445,000
			선택품목금액	9,173,000	917,000	8,256,000
084.9100B	514-701	기본형	**합 계**	479,683,000	47,966,000	431,717,000
			주택가격	459,437,000	45,943,000	413,494,000
			발코니 확장금액	6,827,000	682,000	6,145,000
			선택품목금액	13,419,000	1,341,000	12,078,000

■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침실2/침실3 분리)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금회 공급가격은 최초공급시「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에 공실기간에 대한 기간이자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은 기본공사비 및 확장공사비의 실제시공비용을 부위별 면적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부위별 부분확장 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실별 구분 가격				
주택형	내역	계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059.9700A	기본공사비(A)	69,159	21,009	8,337	8,728	18,138	12,947
	확장공사비(B)	76,438	23,220	9,214	9,647	20,047	14,310
	계약자부담액(B-A)	7,279	2,211	877	919	1,909	1,363
059.9400B	기본공사비(A)	69,606	23,316	9,807	9,046	17,734	9,703
	확장공사비(B)	76,767	25,715	10,816	9,977	19,558	10,701
	계약자부담액(B-A)	7,161	2,399	1,009	931	1,824	998
084.9100B	기본공사비(A)	83,968	25,516	16,964	13,214	28,274	0
	확장공사비(B)	90,795	27,591	18,343	14,288	30,573	0
	계약자부담액(B-A)	6,827	2,075	1,379	1,074	2,299	0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금회 공급대상주택은 공사가 완료되어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하며, 변경 또는 추가선택이 불가합니다.**

※ 각 세대별 설치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선택품목(가전옵션 포함)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변경 또는 추가선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주택형)	추가선택품목 설치항목
510-303 (059.9700A)	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상판), 주방장식장,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엔지니어드스톤), 주방가전(인덕션3구), 빌트인 전기오븐, 현관중문(3연동도어), 붙박이장(침실3), (침실1)드레스룸(화장대+가구도어+시스템가구),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506-501 (059.9400B)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엔지니어드스톤),현관중문(3연동도어),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513-2002 (059.9400B)	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상판),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엔지니어드스톤), 현관중문(3연동도어), 붙박이장(침실3) (침실1)드레스룸(시스템가구),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514-701 (084.9100B)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엔지니어드스톤), 주방가전(인덕션3구), 현관중문(3연동도어), (침실1)드레스룸(화장대+가구도어+붙박이장) 침실1가구(슬라이딩도어+시스템가구), 붙박이장(침실3),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 **추가선택품목비용의** 세부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주택 타입	공간 선택유형	구분	유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59A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식탁	①-1 인조대리석(MMA) 상판	849	85	764	
				①-2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951	95	856	
			주방가구	② 비스포크(냉장, 변온, 김치)+가전소물장	5,566	557	5,009	
				③ 주방장식장	750	75	675	
			주방상판	④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236	24	212	
			주방벽체	⑤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1,034	104	930	
			주방가전	⑥ 인덕션3구	39	4	35	
				⑦ 빌트인 전기오븐	334	33	301	
		현관	현관중문	⑧ 3연동도어	966	97	869	
		침실1	가구	⑨ 붙박이장(3칸)	2,907	291	2,616	
			드레스룸	⑩-1 화장대+가구도어+시스템가구	2,411	241	2,170	

주택 타입	공간 선택유형	구분	유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⑩- 2 가구도어+시스템가구(대형)	2,012	201	1,811	
		침실3	가구	⑪ 붙박이장	1,428	143	1,285	
		시스템에어컨		⑫- 1 거실+침실1	3,118	312	2,806	
				⑫-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146	415	3,731	
59B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식탁	①- 1 인조대리석(MMA) 상판	849	85	764	
				①- 2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951	95	856	
			주방가구	② 비스포크(냉장, 변온, 김치)+가전소물장	5,566	557	5,009	
			주방상판	③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236	24	212	
			주방벽체	④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1,013	101	912	
			주방가전	⑤ 인덕션3구	39	4	35	
				⑥ 빌트인 전기오븐	334	33	301	
		현관	현관중문	⑦ 3연동도어	973	97	876	
		침실1	가구	⑧ 붙박이장(3칸)	2,907	291	2,616	
			드레스룸	⑨ 시스템가구	442	44	398	
		침실3	가구	⑩ 붙박이장	1,428	143	1,285	
		시스템에어컨		⑪- 1 거실+침실1	3,131	313	2,818	
				⑪-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130	413	3,717	
84B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식탁	①- 1 인조대리석(MMA) 상판	820	82	738	
				①- 2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915	92	823	
			주방가구	② 비스포크(냉장, 변온, 김치)+가전소물장	5,566	557	5,009	
			주방상판	③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355	36	319	
			주방벽체	④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1,198	120	1,078	
			주방가전	⑤ 인덕션3구	39	4	35	
				⑥ 빌트인 전기오븐	334	33	301	
		현관	현관중문	⑦ 3연동도어	1,005	101	904	
		상부층복도	가구	⑧ 수납장	1,876	188	1,688	
		침실1	가구	⑨ 슬라이딩도어+시스템가구	2,324	232	2,092	
			드레스룸	⑩ 가구도어+화장대+붙박이장	2,174	217	1,957	
		침실3	가구	⑪ 붙박이장	1,428	143	1,285	
		시스템에어컨		⑫- 1 거실+침실1	3,323	332	2,991	
				⑫-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896	490	4,406	

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지정기간은 2025.05.29.(목)~2025.07.28.(월)이며,** 계약 이후 잔금 완납 시 즉시 입주가능합니다.(**상기주택은 선납할인 적용 불가**)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옵션계약금, 잔금, 옵션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Ⅱ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4.)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5.04.30)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 가능)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문신청불가]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2025.04.24.(목)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청양신청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신청일시 이후로는 청약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함(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및 동 · 호수에 대한 추첨은 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동일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Ⅲ 당첨자(예비입주자) 추첨 ·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

■ **추첨일 : 2025년 4월 30일(수) 11: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당첨자의 동·호 및 예비입주자**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추첨은 참관인 없이 직원 입회하에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table>
<tr><th>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th><th>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th><th>당첨자 계약체결</th></tr>
<tr><td rowspan="2">2025.04.30.(수) 16: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td><td>2025.05.02(금)
(10:30 ~ 17:00)</td><td>(전자) 2025.05.29.(목) 10:00~17:00
(현장) 2025.05.30.(금) 13:00~17:00</td></tr>
<tr><td colspan="2">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LH 세종특별본부 1층 주택판매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당첨자 확인 방법</th></tr>
<tr><td>인터넷</td><td>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td></tr>
<tr><td>ARS</td><td>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td></tr>
</table>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로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에 해당되며,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 입주자) 제출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4.)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하여 발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⑥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4.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현장수납 불가, 총주택가격(주택공급금액+발코니확장금액+선택사양품목금액)의 계약금 입금)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2025.05.29. 10:00~17:00) 전자서명 완료하지 않는 경우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후 SMS 발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로그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 추후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 계약으로 체결하시기 바라며 전자계약 체결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 해제 후 진행됩니다.

Ⅳ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및 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1.25.) 참조]

4.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1.25.) 참조]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1.25.) 참조]

6.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1.25.) 참조]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1.25.) 참조]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1층 [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팀]

2025. 04.14.

LH 세 종 특 별 본 부